

#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2
----------	----------

제안년월일 : 2015.03.27

제안자 : 재정건설위원회

## 1. 수정이유

-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매년 위탁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산정이 필요하므로 장기 위탁보다는 단기 위탁하여 재활용센터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수정내용

-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중 위탁기관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함 (안 4.주요내용 라.위탁기관)

##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4.주요내용 중 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행	수정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생략)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2. 제안이유 (생략)	2. 제안이유 (현행과 같음)
3. 제안근거 (생략)	3. 제안근거 (현행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 다. (생략) 라. 위탁기간 : <u>3년</u> 마. (생략)	4. 주요내용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위탁기간 : <u>1년</u> 마. (현행과 같음)
5. 참고사항 (생략)	5. 참고사항 (현행과 같음)